

(재)거제시희망복지재단 공고 제2018-5호

2018년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사업

[재]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는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

2018년 3월 28일

[재]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

1. 대상

거제시 관내 거주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의 저소득계층 자녀(본인)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대학생(전문대학 포함)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

구분	내 용	비고
일반	- 학업성적이 직전 학기 전체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 점수가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대학생(입학예정자 포함) -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많은 대학생	
특별	- 학교 내·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 관련 대회 입상자와 그 밖에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인 대학생	

※ 제외대상

- 휴학생(예정포함)
- 제적, 졸업 등 미등록자
- 마지막 학기 및 초과학기생
- 사이버 대학 및 사내대학생

2. 선발인원 : 20명

3. 지원규모 : 1인 연간 2,000천원 (1,000천원×2회)

4. 지급시기 및 방법

선발인원에 대하여 상·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인계좌 입금

5. 장학금용도

학비와 학업수행을 위한 교재, 부교재 구입 및 각종 자격취득과 기술훈련을 익히기 위한 훈련비 등

6. 장학생 추천 및 선발

- 가. 면·동장은 해당 학생을 추천할 때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재단 이사장에게 추천
- 나. 면·동장은 장학생 추천 시 추천서, 성적증명서,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
- 다. 재단 이사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면·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를 통해 학교 간,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

7. 장학금 지급정지

- 가. 타 시·군으로 전출되었을 때
- 나.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(추천자 유형의 4.일반 학업성적 우수자의 경우)
- 다. 퇴학·정학·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
- 라.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
- 마. 장학금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용자금 및 장학금 운용 관리 규정 제18조 제3항에 규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

8. 제출서류

구분	내 용
공통	① 추천공문 1부 ② 장학생 추천서(면·동장) 및 장학생 추천 개인별 환경조사표 각 1부 ③ 추천서(학교장) 및 성적증명서(직전학기 또는 직전 학년, 원본) 각 1부 ※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④ 주민등록등본 1부(뒷자리 미표기)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경제상황 증빙서류(해당 서류 제출) - 수급자 증명서 - 차상위 계층 확인서 -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- 자활근로자 확인서 - 한부모가족 증명서 ⑦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
해당자	특별장학금의 경우 표창장 등 입증서류 일체

9. 접수기간 : 2018.4.2(월) ~ 4.13(금) 18:00

10. 기타사항

가.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선정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하지 않음

나.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함

11. 사업일정

내 용	일정									
	3	4	5	6	7	8	9	10	11	12
공고(홍보) 및 안내 (18개 면·동주민센터 공문 발송)										
장학생 추천서 접수										
개인별 심사										
장학생의 정원 및 지원금액 이사회 의결										
장학증서 수여식										
상반기 장학금 지급 (개인별 계좌입금)										
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발생 대상자 확인										
하반기 장학금 지급 (개인별 계좌입금)										

※ 사업일정은 사업추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 붙임 1. 장학생 추천서(면·동장용) 1부
2. 장학생 추천 개인별 환경조사표 1부
3. 장학생 추천서(학교용) 1부
4.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. 끝.